

2022년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사업 참여자 2차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부산거주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청년 디딤돌 카드)」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4월 4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 신청자격 참고
 - ① 공고일(2022. 4. 4.) 기준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부산 거주 청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에 계속 거주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1987. 4. 5. ~ 2004. 4. 4.까지 출생자
 - ② 공고일 기준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자
 - ③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지원 제외
 - ④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⑤ 기타 : 기존 부산시 디딤돌카드 사업 미참여자(2017년~2021년)
- 모집인원 : 550명
- 접수기간 : 2022. 4. 8.(금) 14시 ~ 4. 18.(월) 18시 까지
- 지원내용 :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 × 6개월) *생애 1회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온라인 신청 시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 중 취업·창업 시 지원 중단 및 (신설)취·창업성공금 지급(50만원/조건부 지급)
 - 직접비 : 시험수수료,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료, 서적 구입비, 면접 복장 구입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
 - 간접비 : (신설)문화비, 식비, 교통비, 문구류 구입비 등
- 신청방법 : 디딤돌카드 홈페이지(<http://youthdidimdol.kr/>) 온라인 접수
- 지원기간 : 2022. 6월 ~ 11월
- 지급방법 : 전용 체크카드(클린카드)
 - 협약은행 통장 개설 및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포인트가 지급되어 취·창업 활동 분야에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사전 지원방식(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 불가)
 - 주점, 노래방, 카지노, 안마사술소, 귀금속점 등 취·창업 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결제 불가 (* 결제 불가업종 상세내역은 대상자 사전 교육 시 배부 예정)

- 선정방법 :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 5. 선정기준 참고
 - 정량평가(100점) : 가구소득(70점), 미취업 기간(30점)
 - *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평가합산 제외) : 구직활동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 등 심사
 - * 단, 활동계획이 부적정하거나 취업의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의무사항
 - 부산지역 외 거주지(주민등록) 변경, 취·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 미제출 시 자격상실 처리 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 중단
 -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구직활동 증명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제출 시 지급 중단

2. 신청자격 (※신청 시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 구제 불가)

- 연 령 : 공고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 1987. 4. 5.~2004. 4. 4. 출생자
 -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예시) 24개월 군 복무자 :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2022.4.4.)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
- 학 력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 졸업중퇴(제적) 자
 - * 단, 공고일 기준, 대학원 수료자(수료증명서 제출)는 참여 가능
 - * 휴학 중, 졸업유예, 졸업(수료)예정증명서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득수준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 범위 :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 최근 3개월(2022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
 -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소득수준은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①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 '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천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	3,260	4,195	5,121	6,025	6,907	7,780
기준중위소득 (150%)	2,917	4,890	6,292	7,682	9,037	10,361	11,67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2021. 8. 5.)

②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 수 기준(붙임 3 참조)

(가구원수) 미혼 : 부, 모, 본인,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포함 가능. 단, 부/모 또는 본인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일 경우, 형제자매 건강보험 관련 서류제출 필수 동거 여부에 따라 (외)조부모 포함 가능
기혼 : 본인, 배우자, 자녀, 동거 여부에 따라 부모 포함 가능
*형제·자매, (외)조부모, 기혼자의 부모는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에 한해 포함 여부 결정
(소득범위)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

※ '22년 가구소득 산정표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150% 참고

<2022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된 금액임

○ 취업 여부 : 미취업자(미창업자)만 신청 가능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사업자 미등록
-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신청 가능(증빙자료 제출)
-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포함)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졸업유예자, 졸업예정자, 휴학생 등 포함)
-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학습중인 자 신청 가능
- 동시참여 제한 [붙임 2]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구직촉진수당) 및 II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정부 및 부산시 직접 일자리 사업(부산시 취업연수생 고용 사업 등) 참여자, 훈련장려금 참여자
- 참여제한 기간 적용대상(사업 종료일부 6개월 이후 참여) [붙임 2] 참고
- '21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상용) 및 사업자 등록된 자
- 부산시 기존 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 디딤돌카드 수혜 경험자

3. 신청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붙임 1] 참고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본인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자 오기 입력에 따른 피해는 구제 불가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
	2. 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 - 선정 이후 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 및 보고서 제출 의무사항
	3.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인 2022년 4월 4일 이후 발급분(이전 발급분은 불가)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세대주 관계 포함 - 최종 전입일이 확인되어야 하며, 여러 장일 경우 모두 다 첨부
	4.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전체이력포함)	- (공고일 기준)최근 2년내내 본인의 최종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보험구분-고용, 조회구분-상용 기준 발급 / 산재-일용이력 심사불가 -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5. 최종입학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발급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공고일 기준)대학원 수료자 : 수료증명서 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 공고일인 2022년 4월 4일 이후 발급분(이전 발급분은 불가) - 본인의 및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발급 - 미혼 / 기혼 모두 본인 기준 발급이 원칙이나 가능한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 가구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형제자매, 외조부모, 기혼자의 부모)의 경우 대상자 관계 증명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 * 이혼 및 사별(한부모 가정)/형제자매/외조부모 포함 시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은 [붙임 3] 참고
필수	아래 7~10 서류 : 미혼(부·모·본인), 기혼(본인,배우자,자녀) 필수 ※ 그 외 가구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형제자매, 외조부모, 기혼자의 부모)은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된 가구원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건강보험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결정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자서명 필수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처리) - (온라인 작성) 디딤돌 카드 홈페이지 신청서 2page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2022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9.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가구원 모두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가입자)자격 확인서 첨부 필수, 부/모 또는 본인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일 경우 형제자매 자격 확인서 첨부 필수 (형제자매 포함 시 형제자매의 자격확인서도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 동거여부에 따라 미혼의 경우 (외)조부모, 기혼의 경우 기혼자의 부모 포함 시 자격확인서 첨부 필수
해당자限	11. 병역증명서	- 만 34세 초과한 병역의무 이행자만 제출
	12.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8.(금) 14시 ~ 4. 18.(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① 디딤돌카드 홈페이지(http://youthdidimdol.kr/) 접속 ② 개인 회원 가입(간편 회원가입(네이버/카카오)이 아닌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권장) ③ "2022년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카드+)" 선택 후 신청 ④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⑤ 구비서류 첨부 제출(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파일 업로드) ※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통일 ※ 여러장일 경우 PDF 합본 또는 알집으로 압축 후 업로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 사진 촬영한 파일 업로드 시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흔들림 등) 불인정 될 수 있음 ※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오제출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5. 선정 기준

- 정량평가
 - 가구소득 70점 ▷ 전체 5구간, 30~70점 구간별 10점씩 차등 배점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 월평균 부과액 기준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 금액으로 심사
 - 저소득자 고득점 배점
 - * 가구원 수 : 부모·본인을 기본 가구원 수로 산정, 희망 시 형제·자매 포함 가능
(형제자매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가구원 포함여부를 결정, 단, 부모·본인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일 경우 형제자매는 필수 가구원, 독립한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로 기본산정)
 - 미취업기간 30점 ▷ 전체 6구간, 5~30점 구간별 5점씩 차등 배점
 - 공고일 현재(미취업)부터 졸업·중퇴일자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 간 최근 기간을 미취업기간으로 선정
 - 졸업·중퇴일자 또는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모두 존재할 경우 최근일자로 미취업기간을 산정 (공고일 - 졸업·중퇴일자(고용보험 상실일자) = 미취업 기간)
 - * 동점자는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평가합산 제외) : 활동계획서의 노력도,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 * 단, 활동계획이 부적절하거나 취업의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5. 23.(월) 발표(예정)
- 방 법 :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대상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 예비교육 : *추후 별도 공지(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일시 : 2022년 5월 말 참여자 예비교육(예정)
 - 방법 : 온라인 교육(온라인 상 매뉴얼로 대체 가능) 예정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7. 기타(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18시에는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17시 59분 59초)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마감 시간에는 접속폭주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나,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므로 유의하시어 마감 시간 전 접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서는 마감기한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을 인정하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오제출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음
 - ※ 사업신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온라인 교육 및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부산형 기초보장제 포함) 대상자는 아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할 수 있음
- ※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051-600-1885, 1886, 1888, 1889)

【붙임 1】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아라리	주민등록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 "M건강보험"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상용 선택) ·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상용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정부24"에서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표시되어야 함)
	졸업·제적 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www.gov.kr) · 폐교대학 통합 증명 발급 서비스 (https://www.u-haksa.or.kr/)
병역증명서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발급방법
우피라인	※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확인 방법 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근로복지공단 방문(신분증 지참)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도 제출 必
	졸업·제적 증명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해당 학교 민원실 등
병역증명서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신분증 지참)	

※ 무인발급기 이용 제출서류 발급 시 지문인식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사자(본인·부·모·배우자 등)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붙임 2】 타제도 중복 참여 가능여부

1.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재참여 제한기간 : 2021년 10월 31까지 지원 종료된 경우(마지막 수급일 기준이 아닌 지원사업 종료일 기준)

2. 타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재참여 제한기간 : 2021년 10월 31까지 지원 종료된 경우

3.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또는 부산형 기초보장제

(동시참여) 생계급여, 부산형 기초보장제 동시참여 불허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해야하며, 자활사업 참여시, 디딤돌 카드와 동시 참여 불가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4.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취업성공 패키지

(동시참여) 자기주도적 취·창업 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동시 참여 불가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5. 실업급여

(동시참여)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별도제한 없음

* 디딤돌 카드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

6. 정부지원 훈련(내일배움카드 등) : 계좌 발급 가능, 훈련 장려금 수급 불가

(동시참여) 훈련 장려금과 동시수급 불가

(순차참여) 훈련계좌 중단 또는 종료 후 신청 시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가능 *지원금 종료 후 훈련계좌 참여는 별도 제한하지 않음

7.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

(동시참여) 동시참여 불가

(순차참여) 별도 제한 없음

【붙임 3】 가구소득 세부 산정 방식

1 미혼일 경우

- 부모·본인·형제·자매의 최근 3개월 평균(22.1월~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이혼, 한부모 가정 시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단, 부모·본인 외 가구원을 가구소득 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할 경우
*가구 소득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 : **형제·자매, (외)조부모 등** ☞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

• 부모가 이혼하고, 부와 거주 중이며, 형제·자매 포함하고 싶은 경우,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가구원은 '부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가 이혼 후 부가 재혼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재혼한 상대방도 가구원으로 포함 → 가구원은 '부 + 재혼한 상대방 + 본인 + (형제·자매)'가 됨

- **(부·모)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필요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소득산정대상 제외 사유 제출 후, 심사하여 소득심사대상 제외가 확정된 부모

- **(형제·자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산정대상 여부를 결정

• 형제·자매의 연령, 혼인 여부, 별도 주소·가구 여부와는 무관하게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형제·자매가 부모·본인이외의 자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단, 부모·본인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일 경우 소득산정대상 포함 필수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

2 기혼일 경우

- 본인·배우자·자녀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여부 확인

< 가구원 확인 방법 >

- 가족관계증명서(아래의 확인방식 참고)를 통해 소득산정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확인 방식

▲ 원칙은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 이혼·사망** 등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탈락 처리 * 부모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과 동일

- **(자녀) 신청자** 본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소득 확인 방법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고, 소득산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된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납입액)을 합산